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의 사적 해외여행정보 법무부에 통보 등〉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96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3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군인의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승인받지 않고 국외여행 등을 하는 군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이 허가된 여행기간 등의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

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 7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 소속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②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며, ③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부대나 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이하 이 조에서 “국외여행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설></u>	④ <u>국외여행등의 허가를 받은 군인이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설></u>	⑤ <u>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국</u>

<신 설> <신 설>	<u>외여행등의 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⑥ 군인이 국외여행등의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방부장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u> <u>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등의 허가기준·절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수사기관에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법 제1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면서 그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¹⁾,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군인이 휴가 중에 사적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휘관이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²⁾, 국방부훈령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³⁾에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군인의 사적 국외여행이 급격히 증가⁴⁾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적 국외여행(무단 국외 탈영)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1.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5.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3)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3조의2(사적 국외여행 허가)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인 군무원, 제2조 제1호의 군인, 각군 사관학교 생도 등은 제4조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4조(허가권자)** ①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장,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 ②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허가한다.
- ③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휴가 승인권자가 허가한다.
- ④ 국방부 소속기관·국직부대(기관)의 군인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허가한다.
- ⑤ 합참 소속 군인은 합참의장이 허가한다.
- ⑥ 각 군 소속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이 허가한다.
- ⑦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허가한다.
- ⑧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허가한다.
- 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⑩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현황>

(단위: 명)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2020년	2,753	624	1,221	133	4,731
2021년	1,328	165	216	31	1,740
2022년	6,555	913	2,346	297	10,111
2023년	27,760	4,510	11,866	1,259	45,423
2024년	40,494	7,529	18,537	2,349	68,909
2025년(6.30.)	22,737	3,873	10,394	1,249	38,253

[군인의 무단(미승인) 국외 탈영 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2016년	-	-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1명	-	-	-	1명
2020년	1명	-	1명	-	2명
2021년	-	-	-	-	-
2022년	-	-	-	1명	1명
2023년	1명	-	-	-	1명
2024년	1명	1명	-	-	2명
2025년(6.30.)	3명	-	-	-	3명
계	7명	1명	1명	1명	10명

자료: 국방부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적 국외여행의 허가 절차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가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함으로써 무단 출국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는 군인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군인의 국외 이동 정보를 관계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이동에 따른 보안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안보상 위험 노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군인의 무단 출국을 차단하려면 군인 전체 명단과 허가 여부 등 뿐만 아니라 해외파견·공무출장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공유해야 하므로,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우려가 있어 보임.

- 둘째, 외국군(대만, 터키,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도 국외 여행시 부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체계는 동일하나 현역 군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⁵⁾, 독일의 경우 사적 국외여행을 사전 허가 없이 허용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최근 10년간 10명(연평균 1명) 수준의 미복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법무부에 통보하는 것은 그 실익에 비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군인의 사적 국외여행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기본권 제한, 외국 입법례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복무기강 관련 교육 및 징계기준을 엄정히 운영하는 행정적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군인 전체 명단과 허가정보 제공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공유가 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출국 통제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5) 이 중 징병제 국가로는 대만, 터키, 이스라엘이 있고, 모병제 국가로는 일본, 프랑스가 있음.